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2011. 2.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고,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시행)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수입자,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아성감별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9))

- 1) 의료법이 개정(2009.12.31. 법률 제9906호)되어 처분대상을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의료법 제20조제2항)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 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완화함**

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 1) 의료법이 개정(2010.5.27. 법률 제10325호)되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하였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6))

- 1) 의료법이 개정(2010. 1. 30. 법률 제9386호)되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의료법 제45조)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함**

라.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7))

- 1)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3))

3. 의견제출

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령 제 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2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표에서 “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	--------------	----------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 에 응하여 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 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2개월
---	---------------	----------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법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확인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요청을 거부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의 내용확인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5일
---	---------------	----------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경고
--	---------------	----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9호	
가.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나.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다.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라.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자격정지 2개월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23)을 삭제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3), 4), 6), 7), 8), 10), 11), 12), 13), 14), 16), 17), 19), 20), 21), 22), 29)의 근거법령을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15)의 근거법령을 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18)의 근거법령을 법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16)부터 22)를 17)부터 23)으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24), 25), 26), 27)의 근거법령을 법 제66조 제1항 제8호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37)의 근거법령을 법 제66조 제1항 제6호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가. 38)의 근거법령을 법 제66조 제1항 제7호로 한다.

별표의 2. 개별기준 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	--------	------

별표의 2. 개별기준 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법 제64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
--	---------------	------------

별표의 2. 개별기준 나.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환자로 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게시방법을 위반하거나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	--------	------

별표의 2. 개별기준 나.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3조	시정명령
---	--------	------

별표의 2. 개별기준 나.17)부터 28)을 18)부터 29)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제5조 (생략)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다 (생략)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 중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및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표] (생략) 마~사 (생략)</p>	<p>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제5조 (현행과 같음)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8)·10)과 같은 호 다목7) 중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및 같은 호 가목16) 중 기소유예의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표] (현행과 같음) 마~사 (현행과 같음)</p>
<p>2. 개별기준 가. 의료인 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장 [23]에 한정된다이 의료법(이하 이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p>	<p>2. 개별기준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p>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 2) (생략)	(생략)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생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략)	3)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4) (생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략)	4)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5) (생략)	(생략)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생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략)	6)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7) (생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략)	7)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8) (생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략)	8)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9) (생략)	법 제65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9)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4호	자격정지 3개월
10) 법 제21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략)	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11) 법 제2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략)	11) 법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 열람 요청 또는 사본 송부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발급 요구를 거부한 경우			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의 내용확인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한 경우		
12)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초진기록을 보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12)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당시 작성된 진료 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13)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13)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14)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14)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15)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3호 및 제8호	(생 략)	15)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3호 및 제10호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가.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나.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다.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라. 벌금 1천만원 이상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정지 10개월 자격정지 8개월 자격정지

			1천5백만원 미만 마.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바.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6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2개월
16)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17) (현행 16)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 16)과 같음)
17)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18) (현행 17)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 17)과 같음)
18)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4호 및 제8호	(생 략)	19) (현행 18)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5호 및 제10호	(현행 18)과 같음)
19)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20) (현행 19)와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 19)와 같음)
20)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21) (현행 20)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 20)과 같음)
21)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22) (현행 21)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21)과 같음)
22)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23) (현행 22)와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 22)와 같음)
23)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 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법 제63조	시정명령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 하는 의사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 진료 담당의사 등의 지정 내용등을 건강보험 심사평가 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4)~27)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7호	(생 략)	24)~27)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8호	(현행과 같음)
28) (생 략)	(생 략)	(생 략)	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9)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8호	(생 략)	29)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10호	(현행과 같음)
30)~36) (생 략)	(생 략)	(생 략)	30)~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7)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5호	(생 략)	37)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6호	(현행과 같음)
38) (생 략)	법 제66조 제1항제6호	(생 략)	38) (현행과 같음)	법 제66조 제1항제7호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3) (생 략)	(생 략)	(생 략)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법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공공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생 략)	(생 략)	4) 법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15) (생 략)	(생 략)	(생 략)	5)~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u>의료보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u>	법 제63조	시정명령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u>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게시방법을 위반하거나, 고시·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	법 제63조	시정명령

			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경우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진료 과목별로 1명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 진료 담당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7) (생 략)	(생 략)	(생 략)	18) (현행 17)과 같음)	(현행 17)과 같음)	(현행 17)과 같음)
18) (생 략)	(생 략)	(생 략)	19) (현행 18)과 같음)	(현행 18)과 같음)	(현행 18)과 같음)
19) (생 략)	(생 략)	(생 략)	20) (현행 19)와 같음)	(현행 19)와 같음)	(현행 19)와 같음)
20) (생 략)	(생 략)	(생 략)	21) (현행 20)과 같음)	(현행 20)과 같음)	(현행 20)과 같음)
21) (생 략)	(생 략)	(생 략)	22) (현행 21)과 같음)	(현행 21)과 같음)	(현행 21)과 같음)
22) (생 략)	(생 략)	(생 략)	23) (현행 22)와 같음)	(현행 22)와 같음)	(현행 22)와 같음)
23) (생 략)	(생 략)	(생 략)	24) (현행 23)과 같음)	(현행 23)과 같음)	(현행 23)과 같음)
24) (생 략)	(생 략)	(생 략)	25) (현행 24)와 같음)	(현행 24)와 같음)	(현행 24)와 같음)

25) (생 략)	(생 략)	(생 략)	26) (현행 25)과 같음)	(현행 25)와 같음)	(현행 25)와 같음)
26) (생 략)	(생 략)	(생 략)	27) (현행 26)과 같음)	(현행 26)과 같음)	(현행 26)과 같음)
27) (생 략)	(생 략)	(생 략)	28) (현행 27)과 같음)	(현행 27)과 같음)	(현행 27)과 같음)
28) (생 략)	(생 략)	(생 략)	29) (현행 28)과 같음)	(현행 28)과 같음)	(현행 28)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17) (생 략)	(생 략)	(생 략)	1)~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9) (생 략)	(생 략)	(생 략)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표] (생 략)			[부표]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연락처	(02) 2023 - 7327